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1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김유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진승현

판 결 선 고 2023. 7. 27.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21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1 증여계약을 통해 증여받은 수분양권 지분 자체는 이미 그 이행이 종결되어 소유권으로 변경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후,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의 수분양권 지분의 시가에서 피고가 그에 상응하여 채무자로부터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 목적의 대출채무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산정의 기준시점, 가액배상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가액을 산정하면서 제1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수분양권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의 전체 가액을 49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익자의 선의, 수분양권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